

예 산 총 칙

2009년도 [제3회추경]

제 1 조 : 2009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세입·세출 예산 총액	일시차입 한도액
총 계	888,050,217	26,641,507
일 반 회 계	722,076,062	21,662,282
특 별 회 계	165,974,155	4,979,225
공 기 업 특 별 회 계	32,150,297	964,509
상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32,150,297	964,509
기 타 특 별 회 계	133,823,858	4,014,716
하 수 도 사 업 특 별 회 계	26,461,943	793,858
여수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주민이주사업 특 별 회 계	51,933,592	1,558,008
의 료 보 호 기 금 특 별 회 계	3,302,185	99,066
새 마을 소 득 사 업 운 영 관 리 특 별 회 계	1,010,500	30,315
구 획 정 리 사 업 특 별 회 계	2,963	89
도 시 개 발 사 업 비 특 별 회 계	35,077,332	1,052,320
주 택 사 업 특 별 회 계	2,052,919	61,588
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특 별 회 계	693,863	20,816
경 영 사 업 특 별 회 계	331,415	9,942
공 유 수 면 매 립 사 업 특 별 회 계	455,873	13,676
농 공 단 지 조 성 사 업 특 별 회 계	16,706	501
공 업 용 지 조 성 사 업 위 수 탁 특 별 회 계	6,985,690	209,571
주 차 장 특 별 회 계	4,174,106	125,223
기 반 시 설 특 별 회 계	1,324,771	39,743

제 2 조 :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과 같다.

제 3 조 : 2009년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39,81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: 일반회계 예비비는 1,329,262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: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한다.

1. 총액인건비
2. 지방채상환 원리금

제 6 조 : 최종 추경예산 성립 후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로 간주처리한다.